

18.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2년 11월 18일
- 발의의원 : 권기훈, 박종필, 김재우, 박소영, 윤권근,
김재용, 이재숙, 육정미, 손한국, 이성오 의원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2일
- 상정일자 :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제2차 경제환경위원회(2022년 12월 16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권기훈 의원)

- 제안이유
 - 대구시의 꽃 생활화 촉진 사업과 꽃 체험 교육이 2019년 이후로 축소되어, 코로나19가 완화된 현시점에서 원예교육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사항을 재정비함
 - 지역 시민에게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훈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생활에서 정서적 안정과 행복함을 느끼도록 기여하고, 나아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공헌하고자 함
- 주요내용
 - 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 지원 사업 내용의 구체화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제관)

□ 적법성 여부

-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대구시 화훼 산업의 육성과 화훼 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 중 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,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<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>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(교육훈련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·기술 등을 보급·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5조(지원 사업 등) 제1항 제6호는 당초 ‘화훼산업관련 교육훈련 사업’으로 규정되어 있던 지원 사업의 조문을 개정하여 ‘화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’으로 구체화하였음.

□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지역 화훼산업 관련 교육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여 구체화 한 것으로, 개정 내용은 법령 체계상 적법·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를 교육훈련 사업에 명시함으로써, 활발한 교육 사업을 통해 시민 정서 안정에 기여하고, 화훼산업의 다양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<p>○ 화훼산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? 내년에 많이 축소된 부분에 아쉬움이 있음. 대구 시에서 활성화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.</p>	<p>○ 소비 촉진과 반려식물 지원센터 사업 등 일부 있으나 축소된 부분 있음. 활성화에 노력하겠음.</p>

5. 토론요지

- 해당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해당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해당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해당 없음.